# 전자통장 특약

## 제 1 조 적용범위

- ① 이 약관은 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과 전자통장(은행에서 발급하는 IC칩이 내장된 카드로 이하 '이 통장' 이라 합니다)을 개설한 고객(이하 "고객"이라 합니다)의 은행거래에 관한 모든 사항에 적용합니다.
- ②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객이 거래하는 각 상품의 기본약관, 개별거래 약관(특약 또는 약정서 포함)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. 다만, 거래의 성질상 이 통장에 의한 거래가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어 은행이 거래를 제한한 것은 이 통장으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.

#### 제 2 조 가입대상

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.

## 제 3 조 거래방법

- ① 이 통장을 통하여 거래할 때에는 별도의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습니다.
- ② 이 통장은 은행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한 고객에 한하여 가입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③ 신규 개설시 고객은 계좌비밀번호와는 별도로 개인별인식번호(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로 이하 'PIN'이라 합니다)를 신고하여야 합니다.

##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

- ① PIN은 이 통장에 대한 접근제어 암호로써 은행에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6자리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 지고, 이 통장에 내장된 각 계좌의 비밀번호와는 별도로 통장당 하나의 PIN으로만 구성되며, 발급시 고객께서 PIN-Pad를 통해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.
- ② 이 통장을 통한 거래시 PIN을 연속하여 5회(시간 또는 일자 관계없이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)이상 오류 입력하였을 경우 통장은 자동으로 잠김 기늉으로 전환되어 이 통장에 접근이 불가하여 이 통장에 의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이 통장에 의한 거래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신고 후 PIN을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.

## 제 5 조 지급/해지 청구

- ① 고객이 은행의 창구에서 이 통장으로 예금(신탁 포함) 및 이자를 찾거나 예금(신탁 포함)계약을 해지하고자할 때는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, 고객이 PIN-Pad에 직접 입력한 PIN과 계좌의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일치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지급 또는 해지 처리 할 수 있습니다.
- ② 고객이 자동이체 또는 현금자동출금기, 현금자동입출금기(이하 '자동화기기'라 합니다)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별도로 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### 제 6 조 변경, 사고사항의 신고 및 재발급

- ① 이 통장의 분실, 훼손, PIN의 누설 등 사고발생시에는 은행 영업점에 고객이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때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② 이 통장 발급 후 분실(훼손)하거나 불량으로 인한 교체시에는 고객이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절차는 은행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.

#### 제 7 조 거래내역의 확인

- ① 거래내역은 은행의 창구 또는 은행에서 설치한 거래내역조회 및 출력 기능이 부착된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.
- ② 거래내역의 조회 및 출력기간, 출력방법 등은 상품별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# 제 8 조 면책

PIN-Pad나 자동화기기 등을 통하여 입력된 PIN과 계좌의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같아서 은행이 예금(신탁 포함)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고객이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그 지급이나 업무처리가 PIN의 유출 또는 도용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, 은행이 고객의 PIN과 계좌비밀번호의 유출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-약관- 173호(2016.4.18)